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5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
개정(안)에 대한
신설·강화 규제 심사안

제 출 자	중소기업 청장 한정화
제출 연월일	2013. 5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2
1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	2
2.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·환수범위	7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 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1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신설> 법 제31조 제4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<u>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 절차</u>,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에 '<u>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</u>', '<u>목표 달성을,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제출 등 규정 신설</u>' ⇒ (사유)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4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법적 근거 확보
2.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·환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울리 한 경우</u>○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</u> ⇒ (사유)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거짓 등 부정 방법으로 R&D를 참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

II. 규제심사안

1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

①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(도입배경)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“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”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법적 근거 확보 필요

(추진방안)

-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 등을 마련

(주요내용)

- ①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“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”과 “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”을 신설
- ②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 종료 2개월전에 제출하게 하고,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평가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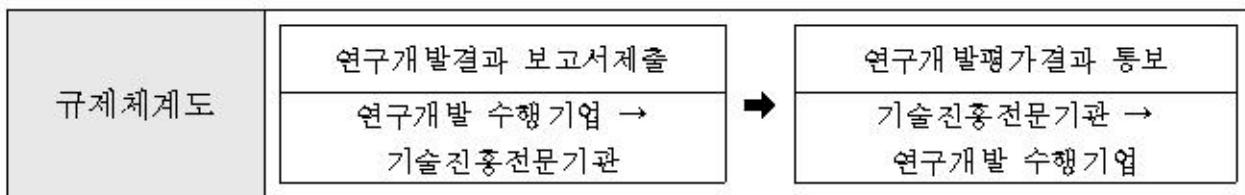
<조문 대비표>

개정전	개정후
<p><신설></p>	<p><u>제20조의2(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) 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1. <u>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2. <u>목표 달성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3. <u>그 밖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 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② <u>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③ <u>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 class="list-item-l1"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

②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					
		○								○					
	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 마련	경제적 규제			사회적 규제			행정적 규제					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•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 • 생산혁신국장 양봉환, 생산혁신정책과장 김일호(042-481-4431)				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•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4항				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의견수렴 방식</th> <th>의견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피규제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</td> <td>행정예고 (3.24~5.1)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이해관계자 중소기업</td> <td>행정예고 (3.24~5.1)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관련 부처 해당없음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유형	의견수렴 방식	의견내용	피규제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	행정예고 (3.24~5.1)	없음	이해관계자 중소기업	행정예고 (3.24~5.1)	없음	관련 부처 해당없음	해당없음	없음
유형	의견수렴 방식	의견내용													
피규제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	행정예고 (3.24~5.1)	없음													
이해관계자 중소기업	행정예고 (3.24~5.1)	없음													
관련 부처 해당없음	해당없음	없음													
규제존속기한	• 관련 법률인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				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• 현행 규제 : 없음 • 강화 규제 내용 ①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'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', '목표 달성을 등 규정 신설 ②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 종료 2개월 전에 제출하게 하고,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평가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														

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4항에서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
-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 제31조제4항에서 연구개발 평가기준, 평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또한,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지원사업은 정부 출연금으로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 - 정부 R&D 투자의 성과제고 및 재정집행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최소 역할임

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대안 검토

- 중소기업청 고시인 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”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이 없음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·편익) 기준 고시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·편익이 수반되지 않음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”에서 규정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은 적정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행정예고(3.24~5.1) 결과, 의견이 없음

3-3 규제의 실효성

- “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”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법적 근거 확보 및 평가기준·절차를 명확화를 통해 연구개발결과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

2. 정산금 · 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 · 환수범위

①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(도입배경)

- 현행 중기청장 고시('12.12.31)로 운영중인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입법례에 같이 시행령에 규정
 - * (타 부처 입법例)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" 등 시행령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참여제한을 부여하여 부정방지

(추진방안)

-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를 참여 제한 사유로 추가

(주요내용)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신설
 -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2년이내, 해당금액)
 - 부도 · 폐업 ·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1년이내 및 5년간 추적후 면제)
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
수행한 경우(3년이내, 전액 또는 이내)

<조문 대비표>

개정전			개정후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<u>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</u> 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)			[별표 2] <u>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</u> 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참여제한 사유</th> <th>제한기간</th> <th>출연금 환수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<신설></u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<u><신설></u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참여제한 사유	제한기간	출연금 환수범위	<u><신설></u>			<u><신설></u>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참여제한 사유</th> <th>제한기간</th> <th>출연금 환수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을리 한 경우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td><td>2년 이내</td><td>해당금액</td></tr> <tr> <td> 나.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td><td>1년</td><td>해당금액 5년간 초과판부 후 면제</td></tr> <tr> <td>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</td><td>3년 이내</td><td>전액 이내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참여제한 사유	제한기간	출연금 환수범위	8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을리 한 경우			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	2년 이내	해당금액	나.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	1년	해당금액 5년간 초과판부 후 면제	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	3년 이내	전액 이내
참여제한 사유	제한기간	출연금 환수범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설>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설>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참여제한 사유	제한기간	출연금 환수범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을리 한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	2년 이내	해당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	1년	해당금액 5년간 초과판부 후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	3년 이내	전액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②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	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존속 기한 연장										
		○																	
	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 기간 · 환수범위	경제적 규제			사회적 규제			행정적 규제		○							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생산혁신국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국장 양봉환, 생산혁신정책과장 김일호(042-481-4431) 								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 								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	의견수렴 방식			의견내용												
	피규제자	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		행정예고 (3.24~5.1)			없음												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		행정예고 (3.24~5.1)			없음									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없음									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법률인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참여제한은 유효기간이 없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								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규제 : 없음 강화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울리 한 경우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2년이내, 해당금액) -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1년이내, 5년간 추적후 면제) 																		

	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(3년이내, 전액 또는 이내)	
규제체계도	<p>참여제한 사유 발생</p> <p>연구개발 수행기업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</p>	<p>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통보</p> <p>기술진흥전문기관 →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 수행기업</p>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
 - 현행 고시를 근거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,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” 및 “과학기술기본법”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는 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” 및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” 등 타 입법사례와 같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

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대안 검토

- 중소기업청 고시인 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”으로 운영되던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이 없음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·편익) 기준 고시로 운영되던 것으로 추가비용·편익이 수반되지 않음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” 및 기존 고시에서 규정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은 적정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행정예고(3.24~5.1) 결과, 이견이 없음

3-3 규제의 실효성

-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거짓 등 부정방법으로 R&D를 참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